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83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송재봉 · 최혁진 · 서영교
김문수 · 민병덕 · 김우영
강준현 · 이광희 · 김남근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대표자가 여성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성인 소상공인을 말한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소상공인이 고용한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활동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회복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심리 상담, 법률구조 등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조정 등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대표자가 여성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성인 소상공인을 말한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u> <u>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u> <u>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u>

상공인(소상공인이 고용한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활동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회복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심리상담, 법률구조 등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조정 등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